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자율적으로 증원할 수 있는 정원의 한도를 총정원의 5퍼센트에서 총정원의 7퍼센트로 상향하고, 기상청에 평가대상 조직으로 설치한 기상서비스진흥국 1개 과(기상융합서비스과)의 평가기간을 2020년 12월 31일까지에서 2021년 12월 31일까지로 1년 연장하며, 소속기관인 기상기후인재개발원에 평가대상 조직으로 설치한 2개 과(교육기획과 및 인재개발과)를 그동안의 평가결과에 따라 평가대상 조직에서 제외하는 내용으로 「기상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대통령령 제00000호, 2020. 00. 00 공포·시행)됨에 따라 변경되는 사항을 반영하는 한편,

인력운영의 탄력성을 제고하기 위해 분리하여 운영 중인 시간선택제 공무원 정원을 전일제공무원 정원에 통합 운영하고, 총액인건비제로 직급을 상향한 인력의 존속기간을 2021년 1월 11일까지에서 2023년 1월 11일까지로 연장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기획재정부 및 행정안전부 등과 합의되었음

-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및 신·구정원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9999. 12. 31. ~ 12. 31.)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3) 행정규제 : 규제 신설·폐지 등, 없음

기상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기상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1항 단서 중 “5퍼센트”를 “7퍼센트”로 한다.

제17조제3항 후단 중 “5퍼센트”를 “7퍼센트”로 한다.

제17조의2제1항 중 “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이하 “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이라 한다) 정원은 별표 3 제2호, 별표 4 제2호, 별표 6 제2호, 별표 7 제2호, 별표 8의3 제2호, 별표8의4 제2호와 같다”를 “공무원의 정원 중 일부를 활용하여 시간선택제공무원 정원으로 활용할 수 있다”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시간선택제공무원 정원을 운영하려는 경우에는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7조에 따른 정원배정 시 소수점으로 배정하여 운영한다.

별표 3 “공무원(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은 제외한다) 계 408”을 삭제하고, 일반직 계 “407”을 “410”으로 하며, 행정서기·공업서기·기상서기·시설서기·전산서기 또는 방송통신서기 “35”를 “36”으로 하고, 행정서기보·공업서기보·기상서기보·시설서기보·전산서기보 또는 방송통신서기보 “19”를 “21”로 하며, “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 계 3.0”를 삭제하고, “일반직 계 3.0”를 삭제하며, “행정서기·공업서기·기상서기·시설서기

·전산서기 또는 방송통신서기 1.0”를 삭제하고, “행정서기보·공업서기보·기상서기보·시설서기보·전산서기보 또는 방송통신서기보 2.0”를 삭제한다.

별표 4 “공무원(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은 제외한다) 계 413”을 삭제하고, 일반직 계 “412”를 “415”로 하며, 행정서기·공업서기·기상서기·시설서기·전산서기 또는 방송통신서기 “33”을 “34”로 하고, 행정서기보·공업서기보·기상서기보·시설서기보·전산서기보 또는 방송통신서기보 “18”을 “20”으로 하며, “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 계 3.0”를 삭제하고, “일반직 계 3.0”를 삭제하며, “행정서기·공업서기·기상서기·시설서기·전산서기 또는 방송통신서기 1.0”를 삭제하고, “행정서기보·공업서기보·기상서기보·시설서기보·전산서기보 또는 방송통신서기보 2.0”를 삭제한다.

별표 6 “공무원(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은 제외한다) 계 521”을 삭제하고, 일반직 계 “521”을 “523”으로 하며, 행정서기보·공업서기보·기상서기보·시설서기보·전산서기보 또는 방송통신서기보 “90”을 “92”로 하고, “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 계 2.0”를 삭제하며, “일반직 계 2.0”를 삭제하고, “행정서기보·공업서기보·기상서기보·시설서기보·전산서기보 또는 방송통신서기보 2.0”를 삭제한다.

별표 7 “공무원(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은 제외한다) 계 515”를 삭제하고, 일반직 계 “515”를 “517”로 하며, 행정서기보·공업서기보·기상서기보·시설서기보·전산서기보 또는 방송통신서기보 “53”을 “55”로 하고,

“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 계 2.0”를 삭제하며, “일반직 계 2.0”를 삭제하고, “행정서기보 · 공업서기보 · 기상서기보 · 시설서기보 · 전산서기보 또는 방송통신서기보 2.0”를 삭제한다.

별표 8의3 “공무원(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은 제외한다) 계 43”을 삭제하고, 일반직 계 “43”을 “44”로 하며, 행정서기 · 공업서기 · 기상서기 · 시설서기 · 전산서기 또는 방송통신서기 “6”을 “7”로 하고, “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 계 1.0”를 삭제하며, “일반직 계 1.0”를 삭제하고, “행정서기 · 공업서기 · 기상서기 · 시설서기 · 전산서기 또는 방송통신서기 1.0”를 삭제한다.

별표 8의4 “공무원(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은 제외한다) 계 43”을 삭제하고, 일반직 계 “43”을 “44”로 하며, 행정서기 · 공업서기 · 기상서기 · 시설서기 · 전산서기 또는 방송통신서기 “2”를 “3”으로 하고, “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 계 1.0”를 삭제하며, “일반직 계 1.0”를 삭제하고, “행정서기 · 공업서기 · 기상서기 · 시설서기 · 전산서기 또는 방송통신서기 1.0”를 삭제한다.

별표 10을 별지와 같이 한다.

환경부령 제591호 기상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부칙 제4조제1항 중 “2021년 1월 11일”을 “2023년 1월 11일”로, “2021년 1월 12일”을 “2023년 1월 12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2021년 1월 11일”을 “2023년 1월 11일”로, “2021년 1월 12일”을 “2023년 1월 12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2021년 1월 11일”을 “2023년 1월 11일”로, “2021

년 1월 12일”을 “2023년 1월 12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2021년 1월 11일”을 “2023년 1월 11일”로, “2021년 1월 12일”을 “2023년 1월 12일”로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기상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별표 10]

기상청과 그 소속기관에 두는 평가대상 조직(제19조 관련)

조직	정원	평가기간
기상서비스진흥국 기상융합서비스과	2명 (4급 1명, 6급1명)	2021년 12월 31일까지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16조(기상청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① 기상청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 3과 같다. 다만, 「기상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25조제1항의 단서에 따라 별표 3에 따른 총정원의 <u>5퍼센트</u> 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따로 정하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 4와 같으며, 별표 4의 정원 중 5명(행정사무관·공업사무관·기상사무관·시설사무관·전산사무관 또는 방송통신사무관 1명, 행정주사·공업주사·기상주사·시설주사·전산주사 또는 방송통신주사 2명, 행정주사보·공업주사보·기상주사보·시설주사보·전산주사보 또는 방송통신주사보 2명)은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한다.	제16조(기상청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① ----- ----- --. ----- ----- ----- -- <u>7퍼센트</u> ----- ----- ----- ----- ----- ----- ----- ----- ----- ----- ----- ----- ----- ----- -----.
② (생략)	② (현행과 같음)
제17조(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①·② (생략)	제17조(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①·② (현행과 같음)
③ 지방기상청에 두는 공무원의	③ -----

직급별 정원은 별표 6과 같다.	-----.
다만 「기상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26조제1항의 단서에	-----
따라 별표 6에 따른 총정원의 5	----- 7
퍼센트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	퍼센트-----
서 따로 정하는 공무원의 직급	-----
별 정원은 별표 7과 같다.	-----.
④ ~ ⑧ (생략)	④ ~ ⑧ (현행과 같음)
제17조의2(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	제17조의2(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
정원의 운영) ① 「행정기관의	정원의 운영) ① -----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	-----
4조제3항 및 「공무원임용령」	-----
제3조의3제1항에 따라 기상청	-----
과 그 소속기관에 두는 <u>시간선</u>	----- 공무원
<u>택제채용공무원</u> (이하 “ <u>시간선</u>	<u>의 정원 중 일부를 활용하여 시</u>
<u>택제채용공무원</u> ”이라 한다) 정	<u>간선택제공무원 정원으로 활용</u>
<u>원은 별표 3 제2호, 별표 4 제2</u>	<u>할 수 있다.</u>
<u>호, 별표 6 제2호, 별표 7 제2호,</u>	
<u>별표 8의3 제2호, 별표8의4 제2</u>	
<u>호와 같다.</u>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기관 운	② 제1항에 따른 시간선택제공
영상 필요한 경우에는 시간선택	무원 정원을 운영하려는 경우에
제채용공무원 정원 외의 공무원	는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정원을 활용하여 시간선택제채	관한 통칙」 제27조에 따른 정원
용공무원으로 운영할 수 있다.	배정 시 소수점으로 배정하여
	운영한다.

환경부령 제591호 기상청과 그 소	환경부령 제591호 기상청과 그 소
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부칙	부칙
제4조(총액인건비제로 상향 조정	제4조(총액인건비제로 상향 조정
한 직급의 존속기간) ① 별표 4	한 직급의 존속기간) ① -----
에 따른 행정주사·공업주사·	-----
기상주사·시설주사·전산주사	-----
·방송통신주사 또는 기록연구	-----
사의 정원 중 1명은 2021년 1월	----- 2023년 1월 1
11일까지 존속하며, 2021년 1월	1일----- 2023년 1월 1
12일 이후에는 그에 해당하는	2일 -----
정원은 행정주사보·공업주사	-----
보·기상주사보·시설주사보·	-----
전산주사보 또는 방송통신주사	-----
보 1명으로 본다.	-----.
② 별표 7에 따른 행정주사·공	② -----
업주사·기상주사·시설주사·	-----
전산주사·방송통신주사 또는	-----
기록연구사의 정원 중 12명과	-----
행정주사보·공업주사보·기상	-----
주사보·시설주사보·전산주사	-----
보 또는 방송통신주사보의 정원	-----
중 6명은 2021년 1월 11일까지	----- 2023년 1월 11일-----
존속하며, 2021년 1월 12일 이	----- 2023년 1월 12일-----

후에는 그에 해당하는 정원은	-----
행정서기·공업서기·기상서기	-----
·시설서기·전산서기 또는 방	-----
송통신서기 8명과 행정서기보	-----
·공업서기보·기상서기보·시	-----
설서기보·전산서기보 또는 방	-----
송통신서기보 10명으로 본다.	-----
③ 별표 8의2에 따른 행정주사	③ -----
·공업주사·기상주사·시설주	-----
사·전산주사·방송통신주사	-----
또는 기록연구사의 정원 중 1명	-----
은 <u>2021년 1월 11일</u> 까지 존속하	-- <u>2023년 1월 11일</u> -----
며, <u>2021년 1월 12일</u> 이후에는	-- <u>2023년 1월 12일</u> -----
그에 해당하는 정원은 행정서기	-----
·공업서기·기상서기·시설서	-----
기·전산서기 또는 방송통신서	-----
기 1명으로 본다.	-----
④ 별표 8의4에 따른 행정주사	④ -----
·공업주사·기상주사·시설주	-----
사·전산주사·방송통신주사	-----
또는 기록연구사의 정원 중 2명	-----
과 행정주사보·공업주사보·	-----
기상주사보·시설주사보·전산	-----
주사보 또는 방송통신주사보의	-----
정원 중 1명은 <u>2021년 1월 11일</u>	----- <u>2023년 1월 11일</u> -----
까지 존속하며, <u>2021년 1월 12</u>	----- <u>2023년 1월 12일</u> -----

일 이후에는 그에 해당하는 정	-----
원은 행정서기·공업서기·기	-----
상서기·시설서기·전산서기	-----
또는 방송통신서기 3명으로 본	-----
다.	--.

신·구정원대비표

■ 기상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별표 3]

기상청 공무원 정원표(제16조제1항 본문 및 제17조의2제1항 관련)

직 급 별	현 행	개정안	증 감
· · 1 공무원(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은 제외한다) 계	· · 408	· · <삭 제>	-408
· · 일반직 계	· · 407	· · 410	+3
· · 행정서기·공업서기·기상서기 ·시설서기·전산서기 또는 방송통신서기	· · 35	· · 36	+1
· · 행정서기보·공업서기보·기상 서기보·시설서기보·전산서기 보 또는 방송통신서기보	· · 19	· · 21	+2

· · 2. 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 계	· · 3.0	· · <삭 제>	-3.0
일반직 계	3.0	<삭 제>	-3.0
행정서기·공업서기·기상서기 ·시설서기·전산서기 또는 방송통신서기	1.0	<삭 제>	-1.0
행정서기보·공업서기보·기상 서기보·시설서기보·전산서기 보 또는 방송통신서기보	2.0	<삭 제>	-2.0

■ 기상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별표 4]

기상청 공무원 정원표(제16조제1항 단서 및 제17조의2제1항 관련)

직 급 별	현 행	개정안	증 감
· · <u>1</u>	· ·	· ·	
공무원(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은 제외한다) 계	<u>413</u>	<삭 제>	-413
· · 일반직 계	· · <u>412</u>	· · <u>415</u>	+3
· ·	· ·	· ·	
행정서기·공업서기·기상서기 ·시설서기·전산서기 또는 방송통신서기	<u>33</u>	<u>34</u>	+1
·	·	·	
행정서기보·공업서기보·기상 서기보·시설서기보·전산서기 보 또는 방송통신서기보	<u>18</u>	<u>20</u>	+2
·	·	·	

· <u>2. 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 계</u>	<u>3.0</u>	<삭 제>	-3.0
<u>일반직 계</u>	<u>3.0</u>	<삭 제>	-3.0
· <u>행정서기·공업서기·기상서기</u> <u>·시설서기·전산서기 또는</u> <u>방송통신서기</u>	<u>1.0</u>	<삭 제>	-1.0
· <u>행정서기보·공업서기보·기상</u> <u>서기보·시설서기보·전산서기</u> <u>보 또는 방송통신서기보</u>	<u>2.0</u>	<삭 제>	-2.0

■ 기상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별표 6]

지방기상청 공무원 정원표(제17조제3항 본문 및 제17조의2제1항 관련)

직 급 별	현 행	개정안	증 감
·	·	·	
·	·	·	
<u>1</u>			
공무원(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은 제외한다) 계	<u>521</u>	<u><삭 제></u>	-521
일반직 계	<u>521</u>	<u>523</u>	+2
·	·	·	
·	·	·	
행정서기보·공업서기보·기상서기보·시설서기보·전산서기보 또는 방송통신서기보	<u>90</u>	<u>92</u>	+2
·	·	·	
·	·	·	
<u>2. 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 계</u>	<u>2.0</u>	<u><삭 제></u>	-2.0
일반직 계	<u>2.0</u>	<u><삭 제></u>	-2.0
행정서기보·공업서기보·기상서기보·시설서기보·전산서기보 또는 방송통신서기보	<u>2.0</u>	<u><삭 제></u>	-2.0

■ 기상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별표 7]

지방기상청 공무원 정원표(제17조제3항 단서 및 제17조의2제1항 관련)

직 급 별	현 행	개정안	증 감
·	·	·	
·	·	·	
<u>1</u>			
공무원(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은 제외한다) 계	<u>515</u>	<u><삭 제></u>	-515
일반직 계	<u>515</u>	<u>517</u>	+2
·	·	·	
·	·	·	
행정서기보·공업서기보·기상서기보·시설서기보·전산서기보 또는 방송통신서기보	<u>53</u>	<u>55</u>	+2
·	·	·	
·	·	·	
<u>2. 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 계</u>	<u>2.0</u>	<u><삭 제></u>	-2.0
일반직 계	<u>2.0</u>	<u><삭 제></u>	-2.0
행정서기보·공업서기보·기상서기보·시설서기보·전산서기보 또는 방송통신서기보	<u>2.0</u>	<u><삭 제></u>	-2.0

■ 기상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별표 8의3]

기상레이더센터 공무원 정원표(제17조제5항 본문 및 제17조의2제1항
관련)

직 급 별	현 행	개정안	증 감
·	·	·	
·	·	·	
<u>1</u>			
공무원(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은 제외한다) 계	<u>43</u>	<u><삭 제></u>	-43
일반직 계	<u>43</u>	<u>44</u>	+1
·	·	·	
·	·	·	
행정서기·공업서기·기상서기 ·시설서기·전산서기 또는 방송통신서기	<u>6</u>	<u>7</u>	+1
·	·	·	
·	·	·	
<u>2. 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 계</u>	<u>1.0</u>	<u><삭 제></u>	-1.0
<u>일반직 계</u>	<u>1.0</u>	<u><삭 제></u>	-1.0

행정서기·공업서기·기상서기 ·시설서기·전산서기 또는 방송통신서기	<u>1.0</u>	<u><삭 제></u>	-1.0
---	------------	--------------------	------

■ 기상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별표 8의4]

기상레이더센터 공무원 정원표(제17조제5항 단서 및 제17조의2제1항
관련)

직 급 별	현 행	개정안	증 감
·	·	·	
·	·	·	
<u>1</u>			
공무원(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은 제외한다) 계	<u>43</u>	<u><삭 제></u>	-43
일반직 계	<u>43</u>	<u>44</u>	+1
·	·	·	
·	·	·	
행정서기·공업서기·기상서기 ·시설서기·전산서기 또는 방송통신서기	<u>2</u>	<u>3</u>	+1
·	·	·	
·	·	·	
<u>2. 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 계</u>	<u>1.0</u>	<u><삭 제></u>	-1.0
<u>일반직 계</u>	<u>1.0</u>	<u><삭 제></u>	-1.0

행정서기·공업서기·기상서기 ·시설서기·전산서기 또는 방송통신서기	<u>1.0</u>	<u><삭 제></u>	-1.0
---	------------	--------------------	------